

가격표의 게시·등록 방법(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)

1. 법인표지·사설화장시설·사설방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,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가.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한 법인표지·사설화장시설·사설방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
 - 나. 상석·비석 등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
 - 다.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,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
 - 라. 사업자번호, 대표자명, 관할행정기관,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·방법 등
2.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,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가.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
 - 나.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
 - 다.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,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
 - 라. 사업자번호, 대표자명, 관할행정기관
3. 가격표는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,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.